

Pet Animal Export Inspection Service

정우성 /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내과

Part 1. 애완동물 출국과 마이크로칩

Part 2. 국가별 검역절차

Part 1.

애완동물 출국과 마이크로칩

1. Overview

Pet Animal Export Inspection Service란 애완동물(개, 고양이)을 동반하여 해외로 출국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출국 심사를 하는 진료 및 서류업무에 해당한다.

Pet animal 출국시 요구되는 조건은 크게 대륙별 또는 대륙내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광견병 청정국가 입국절차와 광견병 비청정국가 입국절차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대부분 issue가 되는 부분은 광견병 비청정국가에서 광견병 청정국가 및 청정국가 인접국가 입국의 경우이다. 광견병 비청정국가에서 광견병 청정국가로 입국할 경우 입국하는 개체(동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증명이 요구된다.

한국의 경우 광견병 비청정국가에 해당하며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의 국가에서 최하위 단계인 unlisted country(third country

not listed)로 분류가 되므로 이들 국가로 입국할 경우 한국이 속한 분류 범주국가에게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출국 및 해당국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과 같이 Unlisted country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작용한다. 예를 들자면 listed third country에서 영국으로 입국할 경우 별도의 계류 없이 Early-Release Law를 적용 받아 보호자가 도착해서 바로 데려갈 수 있으나 한국과 같은 unlisted third country에서 영국으로 입국할 경우 계류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며 이에 따른 계류 비용을 보호자가 전액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하다. 애완동물의 수요증가와 이민증가 등에 의해 최근 애완견의 해외출국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병원 내과의 경우 2000년도부터 Pet Animal Export Inspection service를 실시해왔고 현재까지 애완동물 동반출국을 위한 내원이 약 200여건 있었으며 상담 전화의 경우

내원 수를 초과하여 상당수에 이른다. 이 중 개와 고양이의 비율을 살펴보면 85%: 15%로 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호주, 뉴질랜드의 출국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이외에 주목할 점은 최근 2003년 하반기부터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가들과 일본으로의 출국을 위한 내원의 증가이다. 이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애완동물 출입에 대한 검역법 강화를 반영하는 듯하다. 출국을 위해 병원에 내원한 애완동물의 수는 검역원 측에서 집계하는 출국한 애완동물의 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보호자의 일정변경에 의한 출국 희망국의 변경, 출국 연기 및 포기, 애완동물의 폐사 등의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애완동물과 동반 출국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많으나 공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관계기관들의 미숙한 처리와 불성실한 상담으로 인해 보호자들이 애지중지하는 강아지나 고양이와의 동반출국을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출국준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서류업무가 병행되지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이 아니므로 일선 지역동물병원에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일이며 임상수의사는 본 업무에 대한 법적 수행자격을 가진다. 우선 출국을 위해서는 희망국에 대한 정보숙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출국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상의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proceeding의 순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과 각 proceeding의 timing을 준수하는 것이다. 보호자에게 있어서 출국시간은 매우 중요하며 수의사와 상담 후 결정한 출국일정에 대한 변경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처음 상담시

해당국에 대한 입국규정을 고려하여 예측한 출국 일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다. 특히 이민을 준비하는 보호자의 경우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의사와 상담했던 날짜보다 출국이 지연되지 않도록 처음 내원시 충분한 상담을 해야 한다.

2. Microchip

출국준비의 첫 단계는 microchip 기술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람이 아닌 개체에 대해 자동 개체인식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자동인식 시스템에 관련한 국제표준화기구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2.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
3.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전기 및 전자공학 제외분야의 유럽 표준 취급)
이중 ISO의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에는 Barcode system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이 있다.
RFID system은 좁게 보면 Barcode system을 대체할 차세대 기술이지만 넓게 생각하면 정보통신은 물론 물류, 유통,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차세대 핵심기술이며 특별한 충돌 없이 기존 산업에 자연스럽게 적용시켜 활용할 수

그림 1. 15digits FDX-B type chpe c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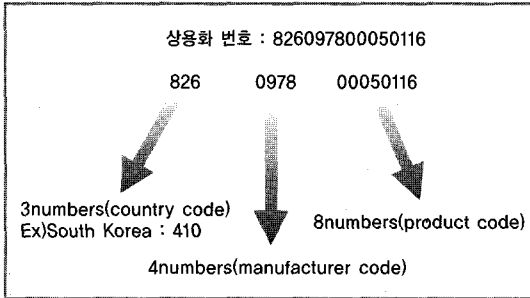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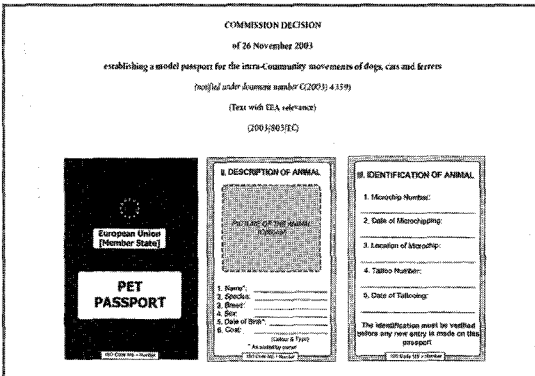


그림 2. 현재 시행중인 유럽연합의 Pet Passport 견본



있다. RFID system은 비접촉형 IC card, 동물용 RFID, 컨테이너용 RFID, 자동차 및 화물용 RFID로 구분된다. 동물용 RFID system이 요즘 거론되고 있는 microchip(ISO 11784/11785)에 해당한다. RFID system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전원 없이 송신주파수의 힘을 이용하여 정보를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개체의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Microchip은 HDX(Half duplex type)와 FDX(Full duplex type)가 있다. FDX type은 FDX-A type과 FDX-B type으로 구분된다. FDX-A type은 10자리 수를 가지며, HDX type과 FDX-B type은 15자리 수의 구성을 가지

고 있다. 15자리의 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ISO 11784/11785는 HDX type과 FDX-B type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microchip에 정보를 입력하는 한계에 따라 read-only transponder, one-time programmable transponder, read-write transponder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현재 일선 동물병원에서 Pet animal을 대상으로 시술하고 있는 microchip은 read-only transponder로서 이는 생산공정에서 이미 불변의 ID code(microchip number)를 갖도록 제작하여 각 제조회사의 전산망(Data bank)에 입력된다.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번호는 복제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복제한 번호를 다른 chip에 입력한다거나 번호를 변경하여 상용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Microchip은 전용 일회용 주사기의 needle내부에 존재하며 주사기는 멸균되어 각각 개별 포장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사기의 needle(18-24Gauge)에 비해 microchip 주사기의 needle은 12gauge정도의 상당한 직경을 가지므로 시술 후 개체에 따라 주사부위의 출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injection site reaction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반드시 보호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시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리더기를 이용하여 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이 시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술 부위를 소독한다(경우에 따라서는 clipping).

3. 동물별 시술방법과 부위에 따라 시술한다.
4. 리더기로 chip number를 확인한다.
5. Data bank에 시술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6. Microchip에 대한 ID card를 발급 받는다.
시술부위는 clipping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 clipping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ISO 가입국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번호가 부여되는데 대륙별 주요 국가에 대한 ISO Nation code는 다음과 같다.

Europe	America
UK : 826	USA : 840
France : 250	Canada : 124
Germany : 276	Mexico : 484
Switzerland : 756	Uruguay : 858
Italy : 380	Brazil : 076
Netherland : 528	Chile : 152
Denmark : 208	Peru : 604
Spain : 724	
Sweden : 752	Oceania
Austria : 040	Australia : 036
	New Zealand : 554
Asia	
South Korea : 410	
Japan : 392	Africa
China : 156	South Africa : 710

Microchip의 수의학에서 활용 목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전염성 질환(Rabies, BSE)의 실태조사 또는 예방지
2. 농장의 자동화
3. 애완동물의 수색

4. 동물의 건강관리나 번식

2003년과 2004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 유럽 연합과 일본에서는 현재 ISO에 충실한 microchip을 개체인식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Pet Passport Law)을 시행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출입국규정에 ISO microchip이 있었다.

위 표에 명시된 Nation Code는 그림 1에서 설명

했던 바와 같이 microchip 번호의 최초 3 자리가 된다. 따라서 이미 microchip을 시술 받은 환자가 내원했을 경우 microchip reader에 인식된 번호를 보고 microchip 시술국 또는 환자의 출생국을 추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하와이(관광병 청정지역)는 ISO 11784/11785를 만족하지 않는 Home Again chip과 Avid chip만을 인정하고 있다. Home Again chip과 Avid chip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되는 microchip으로 ISO를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당기간 이전부터 널리 사용된 chip이다. Avid chip의 경우 번호 판독시 Avid 전용 reader가 있어야만 한다. 호주의 경우 microchip에 대해 ISO를 만족하는 chip과 그 외 Avid chip, Trovan chip, Destron chip의 세가지 제품을 인정한다. 한국의 현실에서 보면

microchip 시술은 유기견 관리에 초점을 두는 듯 하다. Microchip은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개체 증명을 위해 입출국하는 애완동물, 특수목적용 동물, 보호자가 시술을 요청하는 애완동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